FACT SHEET

(Korean - Public Charge, California Edition) 11/1/00

캘리포니아 판

공공부담('Public Charge')과 공공혜택(Public Benefits)의 수취에 대한 요약설명서

이 설명서는 미국 내에서 공공혜택의 수취여부가 이민법의 "public charge" 규정에 의하여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. "Public charge"는 정부의 부담이나 책임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.

- **영주권자(LPRs)가 되려고 신청하고 있는 경우(아직 "Green Card"가 없을 때)-**
  - 다음의 혜택을 받아도 "public charge"로 간주되지 않습니다:
    - **-건강혜택**, 예를 들어 메디-캘 (Medi-Cal), 가족 건강 (Healthy Families), 산전조리나 산전진료소, 보건센타 등 기관의 무료 혹은 저비용의 의료 혜택 프로그램 (요양원 같은 곳의 장기 보험은 해당이 안됨)
    - **-식량 프로그램**, 예를 들어 푸드 스탬프 (Food Stamps), 산모-신생아-어린이 영양 관리 (WIC), 학교 급식이나 기타 식량 보조
    - **-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**, 예를 들어 공공주택, 재난 구조, 에너지 지원 (energy assistance), 직업 훈련 혹은 상담
  - 이민국은 영주권 발급여부 결정에 다음의 이민자를 "public charge"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:
    - **-현금 보조 혜택**, 예를 들어 생계 보조비 (SSI), 캘-워크스 ("CalWORKS")라고도 불리는 저소득층 임시지원 (TANF), 이민자들을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(CAPI)과 주 일반보조 (GA) 등을 받는 경우
    - -정부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, 정신병원 등의 **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**

  참조: 이민국은 이민자의 자녀나 가족들이 현금 보조나 비현금 보조를 받을 경우 **현금 보조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** "public charge"로 고려하지 않습니다.

- **영주권자(LPR)일 경우 ("Green Card"가 있을 때):**
  - LPR는 당사자, 그들의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일원이 다음을 이용한다 해도 그들의 체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(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):
    - **-건강 혜택, 식량 프로그램,** 혹은 **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**
    - **-현금 보조 혜택** (*예외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)
    - **-장기 요양** (*예외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)

  참조:

  *한번에 **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** 영주권자는 재입국 할 때 자신이 public charge에 해당이 되는지 조사 받을 경우가 있고, 현금

보조 혜택이나 장기 요양의 사용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.
*흔하지는 않지만, 영주권자가 처음 미국 거주 5년동안 입국이전에 존재했던 문제 (병이나 장애 등등)로 인하여 현금 보조 혜택이나 장기 요양을 사용할 경우 "public charge"로 간주되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.

● **난민 혹은 망명자들은** 현금 보조 혜택, 건강 혜택, 식량 프로그램, 그리고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한 어떤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

● **친척을 위해 보증하는 것**- 이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현금 보조 혜택과 건강 혜택과 식량 프로그램과 현금이 아닌 다른 혜택을 받아도 그들의 친척들을 위해 보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보증인들은 그들의 친척들을 빈곤층수치의 125% 수준으로 보조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다는 재정 보증서 (Affidavit of Support)를 제출해야만 합니다.

● **미국 시민이 되는 것**- 현금 보조 혜택, 건강 혜택, 식량, 그리고 현금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공 복지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의 취득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.

정보가 더 필요하십니까?

"Public charge"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-
INS 웹사이트 www.ins.usdoj.gov로 들어가서 자료집과 질의문답을 찾아 보십시오. Public Affairs 부분에 여러나라 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

공공 혜택 신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-
적절한 연방, 주 혹은 지역내의 공무기관을 연락하십시오. 도움이 될 만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:
가족 건강 (Healthy Families): 1-800-880-5305 (통화비는 무료)
푸드 스탬프 (Food Stamps): 1-800-221-5689 (통화비는 무료)
WIC: 1-888-942-9675
캘워크스(Cal-Works), 메디-캘(Medi-Cal) 혹은 일반 보조/도움요청: 귀하가 거주하시는 군의 재정지원기관에 연락하십시오.

이 문서는 번역판입니다. 원본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